

10. 建築物의 設備基準 等에 關한 規則 制定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주요내용 -

- 가. 온수온돌의 축열층·방열관등의 설치·시공기준을 정함
- 나.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저지대·지하실 등에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거주하는 세대수에 알맞는 수도배관의 관크기를 정함
- 다.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기조화·냉난방설비를 하는 모든 건축물을 추가함
- 라. 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·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중에 확정, 6.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1. 제정배경

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설비 및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 건설부령으로 제정함과 아울러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제정내용

-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
- 승강기·에스컬레이터의 설치기준·구조
- 환기설비 및 배연설비의 설치기준
- 급·배수 배관설비 및 위생설비의 설치기준·구조
- 피뢰설비·전력용 배관 및 맨홀등의 설치기준
- 건축물의 단열기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

3. 주요 수정내용

가. 기술사의 설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(안 제2조)

○ 제정안 골자

현 행	개 정
1만㎡ 이상 건축물의 설비는 기술사가 설계 (신 설)	(현행과 같음) ·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추가 -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- 3,000㎡ 이상의 업무시설 - 2,000㎡ 이상의 숙박시설·병원 등

○ 기대효과

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설비를 전문기술사가 수행함으로써 설비품질·내구성 향상 및 에너지절약 도모

나. 일부 설비의 기술적 기준 신설(안 제17조, 안 제21조)

○ 제정안 골자

현 행	개 정
(신 설)	· 위생설비의 설치기준 규정 - 위생기구의 규모·간격등 설정 - 환기·마감등 기준 마련
(신 설)	· 피뢰설비의 구조규정 - 피뢰침의 보호각 규정 - 돌침·도체등의 구조·시공기준 설정

○ 기대효과

- 위생문화의 선진화 도모
- 낙뢰시의 안전보장으로 인명·재산보호

다. 급·배수 배관설비의 기준보완(안 제18조, 안 제19조)

○제정안 골자

현행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급수·배수용 배관설비의 설치기준 규정 -부식·동해방지 조치 의무화 -음용수배관재는 내식성의 KS품 사용 -배수트랩·통기관등 설치기준 규정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개소에는 강제배수 설치 의무화 · 거주가구수에 따라 음용수 급수관경 기준 설정 -3가구 이하 : 20mm -5가구 이하 : 25mm -8가구 이하 : 30mm 등

○기대효과

- 배수불량으로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, 지하실등의 우수·오수 배출 원활화
- 급수수요에 적합한 관경의 배관을 설치하여 출수 물량 예방

라. 건축물에너지절약 강화(안 제23조)

○제정안 골자

현행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정 규모·용도의 건축물은 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 제출 의무화 -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-3,000㎡ 이상의 업무시설 -2,000㎡ 이상의 숙박시설·병원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공조·냉난방설비를 하는 1만㎡ 이상의 모든 건축물

○기대효과 : 대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유도